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 건 번 호 제2022-007-043호

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의결연월일 2022. 4. 27.

주 문

- 1. 피심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 '이용자가취할 수 있는 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조치', '이용자 상담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의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해서는아니 된다.
 -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3.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 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를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법」(2020. 8. 5. 시행, 법률 제16955호, 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피심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종업원 수 (명)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피심인이 의 유출신고(2019.9.24.)가 접수됨에 따라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 (2021. 8. 18. ~ 2022. 2. 17.)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를 제공하면서 기준 건의 이용자 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 개인정보 수집현황 >

구분	항목	수집일	건수(건)
회원정보			

나. 개인정보 유출 경위

1) 유출 경과 및 대응

일 시		피심인의 유출인지 및 대응 내용				
2021. 8. 2.						
2021. 8. 6.						
2021. 8. 10. ~						

16	
2021. 8. 17.	피심인은 데이터 열람 및 분석
2021. 8. 23 ~ 31.	
2021. 9. 2.	
2021. 11. 12.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의심) 사실 안내 공지사항 게시 유출 대상자에 개인정보 유출(의심) 통지(이메일)

2) 유출규모 및 경위

(유출항목 및 규모)

일자에 수집된

회원 명의 개인정보*

* 아이디, 주민등록번호(평문), 비밀번호(평문), 이메일, 핸드폰번호, 중복가입확인정보(DI) 등

(유출경위) 유출 추정 시점()에 운영한 시스템을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아 유출 경위 등을 파악하기는 어려움

- 개인정보 DB의 최종 가입일자()를 토대로 이후 유출된 것으로 추정함

3. 개인정보의 취급.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유출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021. 8. 17.에 데이터를 열람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2021. 11. 12.에 유출 통지를 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 2. 25.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같은 해 3. 11.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항목(제1호)',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제2호)',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제3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조치(제4호)', '이용자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부서 및 연락처(제5호)'의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경과하여 통지·신고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4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39조의4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따른 통지·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과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우선 통지·신고한 후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확인되는 즉시 통지·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법 제39조의4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있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2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유출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이 개인정보의 유출 사실을 안 때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초과 하여 2021. 11. 12.에 유출통지를 한 것은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 피심인의 위반사항 >

위반행위	법률	시행령	세부내용(고시 등)	
개인정보 유출 ·통지 위반	보호법 §39조의4①	§48조의4	•개인정보 유출통지 지연	

Ⅳ. 처분 및 결정

1. 시정조치 명령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 '이용자가 취할수 있는 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조치', '이용자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의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해서는 아니 된다.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12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별표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2021. 1. 2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과태료 600만원을 적용한다.

< 「정보통신망법」시행령 [별표9] 2. 개별기준 >

(단위:만원)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이상
도. 법 제39조의4제1항(법 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보호위원회 및 전문기관에 통지 또는 신고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 또는 신고한 경우	법 제75조	600	1,200	2,400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 (▲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과태료 가중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2) (과태료의 감정)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 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법규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에따라 기준금액의 %를 각각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감경을 거쳐 총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과태료 산출내역 >

위반행위(세부내용)	기준금액	가중액	감경액	최종 과태료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				

3. 결과 공표

「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 결과 공표기준」 (2020. 11. 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2조(공표요건)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사고로 인한 피해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제7호)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이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과 과태료 부과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행정처분 결과 공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한 내용 및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수번 위반행위를 한 자		위반행위의 내용		행정처분의 내용 및 결과			
명칭		위반조항	위반내용	처분일자	처분내용		
1 보호법 제39조의4①		개인정보 유출통지 위반	2022.4.27.	시정조치 명령 과태료 부과 만원			

V.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 제12의3, 제64조(시정조치 등)제1항, 제66조(결과의 공표)제1항에 따라 과태료, 시정조치 명령,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2022년 4월 27일

- 위원장 윤종인 (서명)
- 부위원장 최 영 진 (서 명)
- 위 원 강정화 (서명)
- 위 원 고성학 (서명)
- 위 원 백대용 (서명)
- 위 원 서종식 (서명)
- 위 원 염홍열 (서명)
- 위 원 이희정 (서명)
- 위 원 지성우 (서명)